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 여성보육과

제정 2010· 3· 23 조례 제 827호
 일부개정 2014· 3· 21 조례 제1023호
 (이천시 조례 중 도로명주소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5· 12· 31 조례 제1205호
 일부개정 2018· 11· 16 조례 제1436호
 일부개정 2019· 7· 1 조례 제1505호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9· 12· 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2023· 12· 22 조례 제204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및 제47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천시 여성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제2조(위치) 이천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이천시 남천로 31(중리동) 이천시종합복지타운 내에 둔다. <개정 2014· 3· 21>

제3조(사업내용)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경제력 향상, 능력개발, 문화생활에 필요한 기술·취미·교양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2.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한다) 운영사업
3. 여성사회참여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 12· 31]

제3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여성사회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의 목표, 내용, 기간, 대상자 및 인원 등

3. 교육생의 모집, 선발방법 및 교육이수 내용의 평가방법 등
4. 그 밖에 교육계획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2·31]

제3조의3(교육생 선발) 시장은 교육운영의 효율성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생을 선발할 수 있다.

1. 교육과정별로 수강할 수 있는 나이, 학력, 경력 등
2. 그 밖에 교육생 선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12·31]

제3조의4(이용자 지원) 시장은 여성회관의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회관 및 새일센터 행사참가자 행사비 지원
2. 목적사업추진에 따른 유공자, 모범교육생 및 강사 표창
3. 목적사업추진을 위한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4. 그 밖에 여성회관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12·31]

제3조의5(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로써 이천시 여성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3조의6(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여성회관 운영의 기본시책
2. 여성회관의 교육사업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여성회관 관련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에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4조(시설의 이용)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그 여성이 동반하는 가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12·31>

제6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여성회관의 시설사용허가 및 수강신청을 한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나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법인·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31, 2019·7·1, 2023·12·2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5의2. 삭제 <2023·12·22>
6.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여성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2.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3. 시설사용 또는 강의개시 24시간 전까지 사용·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수강료 전액 반환
4. 강의개시 이후에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분의 수강료 반환

제8조(손해배상책임 등) ① 시설사용자가 고의·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8·11·16>

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개정 2015·12·31, 2018·11·16>
- ③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그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 ④ 사용자는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⑤ 삭제 <2018·11·16>

[제목개정 2018·11·16]

제8조의2(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사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여성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2. 그 밖에 회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18·11·16>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27>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
2. 수탁관리자가 위탁관계협약을 위반한 때
3. 수탁관리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여성회관의 운영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점검 및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여성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21 조례 제1023호, 이천시 조례 중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6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조례 제1505호,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9조제8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17조,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2조제2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제13조,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제4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6조제3항,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3조,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2조제3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2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1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15조,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5조,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제4항 및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각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칙 <2023·12·22 조례 제2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여성회관 대관료 및 교육 수강료(제6조제1항 관련)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1. 회의실	평일	1회	30,000	①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다만, 초과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초과사용료는 기준금액의 2분의 1로 한다.(단, 야간 및 냉·난방기 사용시는 20퍼센트를 가산한다)
	휴일	1회	40,000	
2. 다목적실/ 방음강의실				② 주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며 야간은 오후6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로 한다.
가. 평일		1회	20,000	
나. 휴일		1회	25,000	
3. 일반강의실				
가. 평일		1회	15,000	
나. 휴일		1회	20,000	
4. 전시설		1일	30,000	냉·난방기 사용시는 20퍼센트를 가산한다.

(교육수강료 및 보육실수탁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기술교육과정	1인 1개월	10,000원	재료비 본인부담
취미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			
보육실 수탁료	1인 1개월	15,000원	교육수강생 자녀

(체력단련실 및 에어로빅 강습회원 월회비)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성 인	1일 2시간 주 3회	30,000원	
중.고생	"	20,000원	